

FILK 認證制度

1. 개요

FILK 인증제도는 국내 손해보험업자들의 출연(出捐)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15여년에 걸친 안전점검, 화재사례분석 및 조사연구 등의 방재활동 경험을 가지고 부설기관으로 설립한 「방재시험소」(Fire Insurer's Laboratories of Korea: 약칭 FILK)가 전문방재기술을 갖춘 연구인력과 각종 첨단 시험연구설비를 확보하여 방화, 소방, 기타 안전관련제품의 품질을 인증하는 적극적인 방재활동의 하나이다.

이 인증제도는 제조자에게는 제품의 품질향상을 유도하여 대내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사용자에게는 우량제품을 추천하여 이를 널리 사용케 함으로써, 인명의 피해나 화재의 발생 등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제반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고, 재해 발생시에도 피해의 범위를 극소화하여 손실경감에 크게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다.

2. 인증마크



FILK 마크는 선진제국의 안전기준(Safety Standard)과 유사한 국제수준의 「시험소인증기준」(FILK Standard)을 인증품목별로 전문성있게 제정

본협회부설 방재시험소 인증업무실 제공

하고, 이 기준에 의거해 해당 신청제품의 품질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공장심사와 제품의 성능을 평가하는 엄격한 인증시험을 거쳐 적합한 제품에 한하여 라벨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증표이다.

미국, 영국 등 구미 여러나라에서는 이미 1백여 년 전부터 보험회사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시험연구기관들이 방화·안전 관련제품들의 인증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UL 및 FM, 영국의 LPC(旧: FOC) 등의 인증마크는 세계적으로 그 신뢰도가 높은 실정이다.

3. 인증대상품목

현재 시험소의 인증대상품목은 화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제품에 중점을 두고있으며, 주요품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건축재료

-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 불연성 내장재
- 벽, 보, 바닥, 기둥 등 내화구조재
- 방화문, 방화셔터 등

(2) 방염제품

- 커튼, 카페트, 벽지 등 실내장식물
-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의 유기내장재
- 포장가구류, 의복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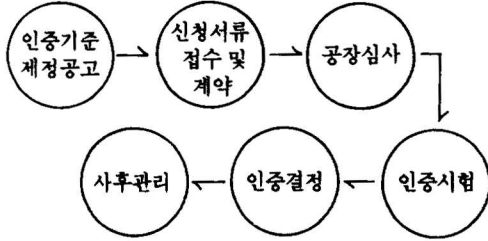
(3) 소방용품

- 소화기, 소화약제(포소화약제 포함)

- 스프링클러 헤드류
- 경보설비용 감지기류 등

4. 인증절차

〈업무흐름도〉



(1) 인증기준 제정공고

시험소내에 전문분야별로 인증기준 제정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국내의 관련기준을 검토한 후 적절한 인증기준을 제정, 간행물 등에 공고한다.

(2) 신청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인증신청서(시험소 소정양식), 신청제품의 사내 규격, 품질보증계획서 등을 접수하여 관련규정에 의하여 검토하고, 그 내용이 적절할 경우 인증결정에 필요한 공장심사, 인증시험 등의 제 비용을 산출하여 품질인증과 사후관리를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다.

* 품질보증계획서의 주요 기술사항

- 조직원의 구성, 책임과 권한, 교육훈련현황
- 자재, 공정, 제품관리
- 제조설비, 시험기기 관리
- 외주관리 사항
- 품질보증검사, 불합격제품의 조치 등

(3) 공장심사

공장심사원(시험소직원)을 공장에 파견하여 20개 관리항목으로 되어있는 공장심사기준에 의해 인증신청제품의 품질관리전반에 관한 상태를 심사 평가하며, 심사를 받은 공장은 A, B, C급으로 구분해 이에 따라 사후관리시에 공장방문 및 인증확인 시험횟수 등이 결정되어진다.

(4) 인증시험

공장심사원이 공장심사시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소, 제조공장 또는 외부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기준에 의거해 제품의 방화 또는 소방관련 부분의 성능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5) 인증결정

인증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인증심의회에 인증신청제품에 관한 제반서류, 공장심사 및 인증시험 결과를 회부하여 심의토록하고, 이 회의결과를 토대로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6) 사후관리

인증결정 통보후 인증마크 사용에 대한 상호 협의를 거쳐, 라벨부착 등의 방법으로 인증제품에 표시를 하며, 제조자는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로트별 검사 및 정기적 품질검사 등을 실시, 인증제품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험소는 연 2~5회 공장을 방문하고, 공장 또는 시험소에서 시험시료를 채취하여 인증유지상태를 확인한다.

5. 인증비용

(1) 인증신청비용

인증여부 결정시까지 필요한 공장심사 인건비, 인증시험비, 기타당비 등을 실비정산가액방식에 의하여 산출 적용하며 계약체결시 소정의 예치금을 받는다.

(2) 사후관리비용

제품의 생산량, 품질관리상태, 제품단가 등을 고려하여 공장도 가격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제조자와 시험소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월납 또는 상호 계약된 방식으로 납부한다.

6. 인증효과

(1) 제조자

전문시험연구기관에서 국제수준의 인증기준으로 제품의 성능을 평가, 인증하므로 기업의 이미지가 향상되고 품질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이 강화된다.

또한 품질인증목록을 발행하여 관련업체 및 행정관서 등에 배포하고, 제조자 이익을 위하여 매스컴광고 등의 방법으로 인증제품, 인증마크를 적극 홍보하며,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안전점검시 건물주들에게 인증제품의 사용을 유도하여 타업체와의 판매경쟁에서 유리하다.

(2) 사용자

국내 최고수준의 제품에 대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하므로 우수제품의 선택구입이 용이하고 인증제품 사용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가입시 할인요율 적용 등에 의한 혜택을 받는다. (●)